

2018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금 선발안내 [학생용]

※ 장학금 신청은 '18.1.5(금) 09시부터 1.16(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I 선발요건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지원대학

-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3 참조)
-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 ※ 단, 장학금 지원 배정 제한 대학 지원제외 (첨부 4 참조)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7.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소득분위

- 2017.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학기
- ※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계속지원 조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소득(기초~8분위)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 농업인의 자녀

심사

- 정량지표(성적, 소득분위)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재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기타사항

휴학 및 복학 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편입자 (전공심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7.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국가장학금(1)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과 협의

II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1.5(금) 09:00~1.16(화) 17:00

III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신청방법(학생→재단)

-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선발절차



IV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학교→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2.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 (등록금초과자)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변동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나. 반납방법 (학생→학교→재단)

※ 학생은 학교에 장학금 즉시 취소 또는 변경 요청할 것

반납대상	재단 장학금 지급 전	재단 장학금 지급 후
전액장학생, 기타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않는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부분반납 불가)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과 협의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초과금액 변경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1)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단,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V 기타사항

1. 성적처리 안내 (학교)

구분	처리내용
재단 심사기간 중 성적확인이 되는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 재단으로 성적증명서 제출, 재단에서 직접 입력, 심사
재단 심사기간 중 성적확인이 안되는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락처리
Pass/Non-pass 성적증명서 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지침에 따라 Pass 기준이 80점 이상인 경우 추천 ※ 성적 입력란에 80점으로 기재 Pass 기준이 별도 없는 경우 추천불가
복학예정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학점 적용

※ 성적은 학교심사기간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

2.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자격상실 기준내용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수 학점 미달자 이수 성적 미달자 소득분위(0~8분위) 미충족자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제적, 자퇴, 징계자, 非농식품계열(非 영농창업특성화학과) 전과자, 휴학생(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생, 미등록자 등 학적변동자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자격상실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기타 장학생 선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처리 됨	

VI 2018년 2학기 주요 변경사항

- 저소득층 학생 성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학기 성적기준 완화하는, 'C학점 경고제' 도입('18.2학기)

구분	현행	변경
적용대상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중 저소득층(기초~2분위)
성적기준	백분위 80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80점 미만
유예기간	없음	2개 학기까지 인정
적용시기	-	2018.2학기부터

【첨부 1】 ※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함

신청자(학생본인)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신규자	계속자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복학예정자는 재적증명서 원본 1부 (단, 복학예정일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인정)	○	
부모(또는 본인)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증빙서류 안내 참조	○ ¹⁾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농업인과 학생 본인관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성적증명서	■ 별도 제출하지 않음 ■ 교직원이 성적확인 후 최종 입력예정	

-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17. 11. 28(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 제출해야 함
-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이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 성명 및 도장 확인서명(부서 연락처),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하도록 함
- *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발행처의 직인이 있는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

1)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만 인정(본인의 농업인 증빙서류는 미인정)

【첨부 2】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아래 구비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

구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업 (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증) 관할 사. 군. 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이상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반드시 변경이력이 나오도록 발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조합원 증명서 및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사. 군 산림조합

- 농업인은 장학금 공고일을 기준으로 모든 증빙서류가 1년 이상 현재까지 계속 종사자에 한하여 인정
- * 발급 서류에 반드시 1년 이상 농업종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앞쪽, 뒤쪽 모두 스캔)와 개체확인 각 1부씩 제출하며, 개체확인서는 반드시 발급일자가 표기되어야 함
- *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
- 임업인의 실적증명서는 거래처에서 증명 받아 제출하면 인정함
-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17. 11. 28(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모든 구비서류는 상기 명기된 발행처의 직인 날인된 서류만 인정되오니, 발행처의 직인이 있는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 후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

※ 위 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

※ 농업인의 인정은 증빙서류에 16.12.29이전부터 농업에 종사 또는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

※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

【첨부 3】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217개교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1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37	광주보건대학
2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38	광주여자대학교
3	가톨릭관동대학교	39	구미대학교
4	가톨릭대학교(성심)	40	국민대학교
5	강남대학교	41	국제대학
6	강동대학교(장호원)	42	군산대학교
7	강릉원주대학교(통합)	43	극동대학교
8	강원대학교(춘천)	44	금오공과대학교
9	강원대학교(삼척)	45	김천대학교
10	건국대학교(서울)	46	김포대학
11	건국대학교(충주)	47	나사렛대학교
12	건양대학교	48	남서울대학교
13	경기과학기술대학	49	단국대학교(죽전)
14	경기대학교(수원)	50	단국대학교(천안)
1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1	대경대학
16	경남대학교	52	대구가톨릭대학교(효성)
17	경남정보대학	53	대구과학대학
18	경동대학교	54	대구대학교(경산)
19	경민대학	55	대구보건대학
20	경북대학교	56	대구의인대학교
21	경북대학교(통합)	57	대덕대학
22	경상대학교	58	대림대학교
23	경성대학교	59	대전과학기술대학교
24	경운대학교	60	대전대학교
25	경인여자대학	61	대전보건대학교
26	경일대학교	62	대진대학교
27	경희대학교(서울)	63	덕성여자대학교
28	경희대학교(국제)	64	동강대학
29	계명대학교	65	동국대학교(서울)
30	계명문화대학	66	동국대학교(경주)
31	고려대학교(안암)	67	동남보건대학교
32	고려대학교(세종)	68	동덕여자대학교
33	고신대학교	69	동명대학교
34	공주대학교	70	동서대학교
35	광운대학교	71	동서울대학
36	광주대학교	72	동신대학교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73	동아대학교	117	세한대학교
74	동양대학교	118	수성대학교
75	동양미래대학	119	수원과학대학
76	동원대학	120	수원대학교
77	동의과학대학	121	수원여자대학
78	동의대학교	122	숙명여자대학교
79	동주대학	123	순천대학교
80	두원공과대학교	124	순천향대학교
81	마산대학교	125	송실대학교
82	명지대학교(용인)	126	송의여자대학
83	명지대학교(서울)	127	신구대학
84	명지전문대학	128	신라대학교
85	목원대학교	129	신성대학
86	목포대학교	130	신안산대학교
87	배재대학교	131	신한대학교
88	배화여자대학	132	아주대학교
89	백석대학교	133	안동대학교
90	백석문화대학	134	안산대학교
91	부경대학교	135	안양대학교(안양)
92	부산가톨릭대학교	136	여주대학
93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37	연성대학교
94	부산대학교	138	연세대학교(서울)
95	부산외국어대학교	139	연세대학교(원주)
96	부천대학	140	영남대학교(경산)
97	삼육대학교	141	영남이공대학
98	상명대학교(서울)	142	영산대학교
99	상명대학교(천안)	143	영진전문대학
100	상지대학교	144	오산대학
101	서강대학교	145	용인대학교
102	서경대학교	146	용인송담대학
103	서영대학	147	우석대학교
10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8	우송대학교
105	서울대학교	149	우송정보대학
106	서울시립대학교	150	울산과학대학
107	서울여자대학교	151	울산대학교
108	서원대학교	152	원광대학교
109	서일대학	153	원광보건대학
110	서정대학교_본교	154	위덕대학교
111	선문대학교	155	유원대학교
112	성결대학교	156	유한대학
113	성균관대학교(통합)	157	을지대학교(성남)
114	성신여자대학교	158	이화여자대학교
115	세명대학교	159	인덕대학
116	세종대학교	160	인제대학교(김해)

번호	학교명	번호	학교명
161	인천대학교	190	한국과학기술원
162	인천재능대학	191	한국교통대학교(충주)
163	인하공업전문대학	192	한국국제대학교
164	인하대학교	19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65	장안대학	194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66	전남과학대학교	195	한국영상대학교
167	전남대학교(광주)	196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168	전북대학교	197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169	전주대학교	198	한국항공대학교
170	전주비전대학	199	한국해양대학교
171	제주대학교	200	한남대학교
172	제주한라대학	201	한동대학교
173	조선대학교	202	한라대학교
174	조선이공대학	203	한림대학교
175	중부대학교	204	한림성심대학
176	중앙대학교(서울)	205	한밭대학교
177	중앙대학교(안성)	206	한서대학교
178	중원대학교	207	한성대학교
179	창원대학교	208	한신대학교
180	창원문성대학	209	한양대학교(서울)
181	청강문화산업대학교	210	한양대학교(안산)
182	청운대학교	211	한양여자대학
183	청주대학교	212	협성대학교
184	초당대학교	213	호남대학교
185	충남대학교	214	호서대학교
186	충북대학교	215	호원대학교
187	충청대학	216	홍익대학교(서울)
188	평택대학교	217	홍익대학교(세종)
189	한경대학교		

【첨부 4】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제한 대학

구분	제외 대학명	학교수
2018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 ²⁾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응지세무대학교, 한중대학교, 한려대학교	9개교
소수 재학생 대학	가야대학교(김해), 가톨릭상지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릉영동대학, 강원관광대학, 강원도립대학, 거제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주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금강대학교, 기독교대학교, 김해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남부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동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아보건대학교, 동우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루터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예술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지영서대학, 서라벌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해대학, 선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덕대학교, 성심외국어대학,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원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연암공업대학, 연암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제2캠퍼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제대학교(부산),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 창신대학교, 청암대학, 청구교육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전문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영대학, 한일장신대학교, 해전대학, 호남신학대학교, 호산대학교	133개교
	합계	142개교

2) 교육부가 지정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2018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2017. 9. 8발표)